

瑞山市市立圖書館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- 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9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市 立 圖 書 館 長 朴 奉 雨)

가. 提 案 理 由

- 現 行 「 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 」 (이하 “ 조례 ”라 한다)중
 - 도서관 입장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 要 骨 子

- 동 조 례 안 제 4 조 제 1 호 의 「 다른 사람 이 혐 오 할 만 한 결 함 이 있 거 나 전 염 병 질 환 이 있 는 자 」 에 대 한 입 장 제 한 규 정 을
 - 「 전 염 병 질 환 이 있 는 자 」 로 정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제한 규정중 「다른 사람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」에 대한 막연한 규정을 삭제하여
 - 인권평등의 원칙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, 수해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- 질의 : 조례안 제4조제1호 “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”의 범위와 판별 방법은?
- 답변 :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의 판별은 현실적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질환만 가능함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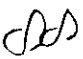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0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23.

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9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사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도서관 입장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다른사람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“전염병 질환이 있는자”로 완화함(안 제4조제1호).

□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규제개혁심의회 심의('99. 6. 23) 결과 → 완화

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4조(입장의 제한) 도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다른사람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입장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전염병 질환이 있는자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